

#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 보도 | 20.10.27.(화) 조간 | 배포 | 20.10.26.(월) |  |
|-------|----|-----------------|----|--------------|--|
|       |    |                 |    |              |  |
|       |    |                 |    |              |  |

책 임 자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02-2100-1730)

담 당 자

한필윤 사무관(02-2100-1736) 이대승 사무관(02-2100-1725) 정우용 사무관(02-2100-1807)

# 제 목: 2020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영상총회 참석 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 FATF 총회 개최 개요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2기 제1차 총회가 '20.10.21.(수)~23.(금)(한국시간 19:00~22:00) 영상회의로 개최\*됨
  - \* FATF는 매년 3회(2월, 6월, 10월)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난 6월에 이어 이번 총회도 영상회의로 개최
- ◇ 주요 논의 내용
  -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 ②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 및 공개성명서 채택
    - \* 각국은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을 확인·평가 하고, 위험 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이란·북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유지 / 아이슬란드·몽골,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제외

# [주요결과 **①**] 코로나19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및 대응

- □ 코로나19의 확산은 우리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도 이에 따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 FATF는, 의료품 위조, 투자 사기, 사이버 범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악용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죄자들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악용하고 있으며,
  - 코로나19는 일부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탐지, 예방, 조사하는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 FATF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조사에서 응답의 절반 이상에서 자금세탁 활동의 탐지, 조사, 기소 능력에 영향이 있음을 보고
  - FATF는 향후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발생하는 과제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한 경험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대응을 위한 자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과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각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 이에 우리나라도 코로나19의 영향 및 대응에 대한 국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의 지속성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❷】확산금융 관련 FATF 국제기준 개정

- □ FATF는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 등의 조달(이하 '확산금융') 차단조치 강화를 위한 FATF 국제기준 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 이번에 승인된 개정은 국가나 금융회사등이 확산금융 관련 정밀 금융제재 의무\*의 위반 가능성·불이행·회피 위험(이하 '확산금융 위험')을 확인·평가하고 그 위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 우리나라는 「공중등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제도**로써 이행 중
  - **향후 FATF는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와 대웅 지침서'**를 마련 하여, 각국 및 금융회사등이 **새로운 국제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도울 예정이며,
  - 개정된 국제기준에 대한 각국의 이행여부는, 다음(5차) 라운드 FATF 상호평가(현재 4차 라운드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는 '19년에 수검) 부터 점검할 계획입니다.
- □ FATF는 국제기준 개정 승인과 더불어 확산금융 방지에 대한 공개성명서(붙임2)도 채택하여, 이번에 개정된 국제기준의 이러한 의미와 세부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우리나라도 개정된 국제기준 및 향후 발간될 지침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법규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 【논의결과 ❸】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 논의

-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을 평가하고, 그 중 <sup>①</sup>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sup>②</sup>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 '강화된 점검 대상 국가'에서 아이슬란드와 몽골을 제외하여 총 **16개국**(지난 6월, 18개국)이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 종                   | 류  | 내 용   | 국가       |
|---------------------|--|---|----------|
| ● 조치를 요하는<br>고위험 국가 | 대응조치<br>(Counter-<br>measure)              |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br>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 | 이란<br>북한 |
|                     | 강화된<br>고객확인<br>(Enhanced<br>due diligence) | 자금세탁방지에 결함이 있어 해당<br>국가와의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          | 없음       |
| ❷ 강화된 점검 [          | 대상 국가                                      | 자금세탁방지의 결함을 치유 중인<br>국가                         | 16개국*    |

\*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바하마, 보츠와나, 가나, 캄보디아, 파나마, 짐바브웨, 알바니아, 미얀마,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모리셔스, 우간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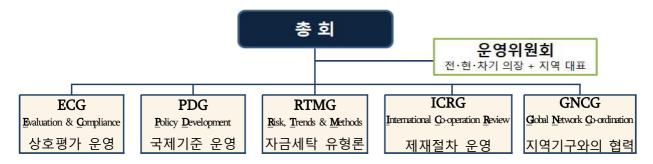
- UN 협약\* 및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u>F</u>inancial <u>A</u>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u>T</u>ask <u>F</u>orce)로서 **'89년** 설립
  - \* 비엔나 협약('88, 마약), 테러자금 조달 억제에 관한 UN협약('99), 팔레르모 협약('00, 조직범죄), 메리다 협약('03, 부패) 등
- 마약자금('89)에서 중대범죄의 자금세탁('96), 테러자금조달('01),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12) 방지로 관할범위를 지속 확대

#### □ 주요 기능

-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에 공동 대응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 국가의 이행 현황을 평가
-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금융제재 결정
-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수법 등에 대한 연구, 대응 수단 개발 등

### □ 운영 방식

 ○ 총회(Plenary), 운영위원회(Steering Group),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으로 운영되며, 연 3회 총회 개최를 원칙으로 함



## □ 회원 구성

- **정회원**(37개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
  - 이외에도 FATF 산하 **9개 지역기구**(<u>F</u>ATF <u>S</u>tyle <u>R</u>egional <u>B</u>ody)를 통해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관할** \* 북한도 아태지역기구에 옵저버 가입
- 우리나라는 '98년 아태지역기구\*(APG), '09년 FATF 정회원 가입
  - \* 41개 회원국 및 37개 옵저버(9개국 + APEC·ADB 등 28개 국제기구)

# **Public Statement on Counter Proliferation Financing**

Paris, 23 October 2020 -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today adopted amendments to Recommendations 1 and 2 and their Interpretive Notes that require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to identify, and assess the risks of potential breaches, non-implementation or evasion of the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related to proliferation financing, as contained in FATF Recommendation 7, and to take action to mitigate these risks, as well as to enhance domestic co-ordination.

By adopting these measures, the FATF has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global response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liferation financing, a serious threat posed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long identified by the relevant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This is in response to the June 2019 call by the G20 in Fukuoka, which looked forward to further action by the FATF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proliferation financing.

These new obligations adopted by the FATF today do not substitute or undermine the existing strict requirements [for countries to implement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to comply with the relevant UNSCRs relating to the prevention, suppression and disruption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its financing.] These existing obligations contained in the FATF Recommendation 7 remain strict rule-based obligations on all natural and legal persons. The new obligations are not intended to cover broader issues of counter proliferation and relevant activity-based prohibitions, which are out of scope of Recommendation 7. The new amendments also do not change the existing obligations on financial institutions and DNFBPs with respect to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set out in the FATF Recommendations 9 to 23.

The new obligations seek to ensure that apart from implementing the existing requirements under Recommendation 7, financial institutions and DNFBPs should identify and assess the risks of potential breach, non-implementation or evasion of targeted financial sanctions when dealing with their customers, and take appropriate mitigating measures commensurate with the level of risks identified. This will ensure that these entities are aware of the risks involved in their businesses and professions, and do not unwittingly support or become part of the proliferation financing networks or schemes, in contravention of the relevant obligations. This will also ensure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s by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entities to their counter proliferation financing efforts, commensurate with the level of risks faced.

In this context, the FATF reiterates its strong support to financial inclusion goals. Ensuring that financially excluded or under-served groups have access to regulated financial or non- financial services without compromising the measures that exist for the purpose of AML/CFT/CPF is a key policy priority. The FATF encourages countries to implement the new requirement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se objectives and apply measures proportionate to the risk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he FATF will develop Guidance to assist countries and the private sector in assessing and mitigating the proliferation financing risk. The FATF will also begin the process of revising its Methodology for assessing these new obligations. As part of a phased approach, the FATF will begin assessing jurisdictions for implementation of these requirements at the start of the next (fifth) round of mutual evaluations, to allow time to put the necessary domestic measures in place.

The FATF expects all countries and regions to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implementation of these new obligations, an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sequence and timeframe for implementation at national level, including by providing guidance to their private sector and sharing relevant PF related information, as appropriate, to enhance compliance with the FATF Standards and better safeguard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from abuse. The FATF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global network to raise awareness of the new obligations an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ir implementation.